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가단50022(본소), 2021가단50039(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지, 담당변호사 강구현

피고(반소원고)B

변론 종결 2021. 9. 1.

판결 선고 2021. 10.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439,759원 및 그중 8,154,232원에 대하여는 2018. 5. 19.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6.부터,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2.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3.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4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7. 22.부터 2018. 8. 31.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변제일로부터 1개월, 월 이자율을 10%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수시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차례대로 '제1~13채권'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2015. 7. 22.	5,000,000		선이자 50만 원 공제
2015. 9. 11.	2,000,000		선이자 20만 원 공제
2015. 10. 14.		2,800,000	
2016. 2. 16.	4,000,000		선이자 40만 원 공제
2016. 5. 19.		500,000	
2016. 6. 17.		600,000	
2016. 7. 5.	3,000,000		선이자 30만 원 공제
2016. 7. 16.		300,000	
2016. 7. 18.		300,000	
2016. 7. 25.		3,000,000	
2016. 8. 16.		600,000	
2016. 9. 30.		6,300,000	
2016. 11. 4.	2,000,000		선이자 20만 원 공제
2016. 12. 5.	10,000,000		선이자 등 120만 원 공제

2015. 7. 22.	5,000,000		선이자 50만 원 공제
2016. 12. 6.	3,000,000		선이자 30만 원 공제
2016. 12. 13.	10,000,000		선이자 100만 원 공제
2017. 4. 13.		200,000	
2017. 10. 27.		310,000	
2017. 12. 12.		15,000,000	
2018. 3. 27.	5,000,000		선이자 등 200만 원 공제
2018. 6. 15.	10,000,000		선이자 30만 원 공제
2018. 6. 21.	3,000,000		선이자 50만 원 공제
2018. 8. 22.	5,000,000		
2018. 8. 31.	3,000,000		
합계	65,000,000	29,910,000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원본의 산정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상 2014. 7. 15. 이후 체결된 금전대차에 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2018. 2. 8. 이후 체결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계산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원본은 별지 총당액 계산표 중 채권정보 표 기재와 같다.

나. 변제충당

피고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원본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각 변제금을 민법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원본에 충당하면 별지 총당액 계산표 중 총당 정보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2017. 12. 12. 기준으로 제1~5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고, 제6~8채권은 원금 13,426,649원(제6채권 1,478,224원 + 제7채권 2,757,329원 + 제8채권 9,191,09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426,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앞서 인정된 변제금 이외에도 현금 등으로 추가 변제하여 원고에게 총 합계 171,9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최종 변제일 이후 추가 차용금

피고는 최종변제일 이후 추가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제9~13채권에 대하여 각 차용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6,929,443원(= 13,426,649원 + 5,000,000원 + 8,157,808원 + 2,753,260원 + 4,591,726원 + 3,000,000원) 및 그중 13,426,649원에 대하여는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7.부터, 8,157,808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 2,753,260원에 대하여는 2018. 6. 21.부터, 4,591,726원에 대하여는 2018. 8. 2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취지 본소 청구 기재와 같이 위 돈 중 일부인 26,439,759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이자제한법 등을 적용하여 법정충당하게 되면

오히려 원고에게 48,95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위 돈을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변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영진

별지